

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

계급별 기준봉급액(제4조제1항관련)

(단위 : 원)

계 급	중 사	상 사	준 위	소 위	중 위	대 위	소 령
봉급액	208,280	213,490	232,180	237,040	253,900	270,760	325,020
계 급	중 령	대 령	준 장	소 장	중 장	대 장	
봉급액	349,280	373,480	392,890	419,630	478,210	515,960	

※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는 위 표의 중사와 기준봉급액이 같다.